

##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규정

2008. 07. 17. 최초제정

2010. 09. 14. 전면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보건대학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에 설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①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에 소속한 교원(전임교수 및 외래강사, 조교 포함)이 대학의 직무(외부과제를 포함한다. 이하 이와 같다)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동물실험을 수반한 연구·조사, 검정·검사 및 교육·훈련 등의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의대상인 것은 제외한다.

②이 규정은 대학의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의 생산·도입·관리·실험·이용·사후처리와 동물실험시설의 관리·운영에 대하여 적용한다.

**제3조(권한과 의무)**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·감독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.

1. 동물실험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 및 승인
2. 실험동물의 생산·도입·관리·실험 및 이용과 실험이 끝난 후 해당 동물의 처리에 관한 확인 및 평가
3. 운영자 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·훈련 등의 확인 및 평가
4. 동물실험시설 운용 실태의 확인 및 평가

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총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위원회의 심의·의결과 관련된 모든 과정은 독립적이며, 의결된 사항에 대해 총장은 그 내용을 바꿀 수 없다.

**제4조(기능)**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대학에 소속한 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모든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·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.
2. 대학의 동물실험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총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
3. 실험동물의 생산·도입·관리·실험·이용·사후처리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
4. 기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장 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부의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실험자에 대해 교육·훈련을 실시한다.

③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 운영 실태조사를 [별지 제7호 서식]에 의거하여 최소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한다.

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총장에게 제출

한다.

1. 동물실험계획 심의·승인 현황

2.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[별지 제7호 서식] 및 미비점 개선 방안

3. 동물실험 및 시설, 교육·훈련 사항 등에 관한 권고사항

⑤ 위원회는 최소 1년에 1회 이상 위원회에서 승인된 동물실험의 지도·점검 및 동물실험과 관련된 내부 불만족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[별지 제8호 서식].

⑥ 총장은 제4항 및 제5항의 내용을 정리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5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.

1. 대학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

2. 대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학과 이해관계가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장이 위촉하는 자

가. 「수의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복지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나. 「동물보호법 시행령」 제6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자로서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

다. 변호사 또는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거나 동물보호·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수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심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정하거나 동물실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추천한 자로 한다. 다만, 위원이 아닌 전문심사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④ 모든 위원은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.

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지명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7조(간사)**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대학의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업무의 실무담당자로 한다.

②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위원회의 안전 검토 및 동물실험계획 심의·승인관련 행정 관리 사항

2. 회의록(심의과정기록 포함), 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 보고 등 관련 기록

3. 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위원회의 신규 위원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
5. 동물실험계획서의 승인내용과 실험내용의 일치 여부 점검
6. 제9조 및 제10조제4항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
7. 대학의 동물실험관련 정책 검토
8. 기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명하는 사항

**제8조(회의)**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,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.

1.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
  2. 위원의 1/3 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
  3. 그 밖에 위원장이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
- ②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.
- ③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이 경우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.
- ⑤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9조(사전검토 등)** ①위원장은 전문심사위원과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를 한 전문심사위원과 간사는 그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를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0조(심의방법·심의평가기준 등)** ①대학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·동물실험계획재승인서·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서 중 해당하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와 함께 대학의 내부 인터넷 망을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동물실험 시작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신규로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고 [별지 제2호 서식]에 따른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규과제에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
2. 연속과제에서 년차마다 다른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년도에 해당하는 동물실험
3. 기존에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신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4. 완료된 과제에 대해 추가로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

③위원회는 1년 단위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매년 동일한 동물실험이 반복되는 동물실험계획의 경우에는 위원회가 최대 3년간 이를 승인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해당과제책임자는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[별지 제6호 서식]에 따른

동물실험계획재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한번씩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[별지 제4호 서식]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제6호 또는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가 행하는 사전 검토에 의하여 위원회의 별도 심의 없이 위원장이 승인할 수 있다.

1. 비 생존 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
2.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% 이하 증가
3. 시료채취 및 투여, 장소의 변경
4. 진정·진통·마취 방법
5. 안락사방법
6.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
7.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
8.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

⑤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·평가함에 있어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동물실험의 필요근거
2.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
3.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관리 등과 관련하여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여부
4.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여부
5.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여부
6.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
7. 동물실험 중에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여부
8. 동물보호법 제13조제6항의 준수 여부
9.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실험에 관련된 지식 및 훈련이수 정도
10. 기타 위원회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⑥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동물실험계획이 수반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[별지 제3호 서식]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와 그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심의·평가하고 그 종합 심의평가결과에 따라 제8조제4항에서 규정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. 이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심의평가한 안건별로 [별지 제3호 서식]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이미 승인 받은 동물실험계획의 변경에 대한 승인 여부를 의결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.

⑦모든 동물 구입 및 실험은 위원회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심의평가하지 않는다.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심의를 할 수 있다.

⑧위원회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“대전보건대학

동물실험지침”을 마련하여 실험자로 하여금 이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1조(심의결과 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된 안전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고, 승인된 안전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. 필요 시 추가로 [별지 제5호 서식]에 따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**제12조(위원의 제외·회피)**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대상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반드시 제외하여야 한다. 동물실험계획서를 제출한 과제책임자가 특정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당해 안전의 심의·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위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당해 심의안전에 관하여 연구·개발 또는 이용 등에 직접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경우
2. 위원이 당해 심의안전에 이해관계인인 경우

**제13조(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 등)** ①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최소 1년에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간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. 점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승인된 방법에 의한 동물실험 실시 여부 확인
2.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실험자 등의 질문사항에 대한 검토
3.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사항 접수 및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

②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.

③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직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 할 수 있다.

1. 상담 및 특별교육
2. 경고장
3.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

④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. 간사가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대신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위원장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수당 등)** 위촉 위원, 전문심사위원, 이해관계인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참석 및 자문 등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(비밀유지·공개)** ①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②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려는 경우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다만, 동물보호법 제19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제16조(기록 유지 및 보관)** 위원회는 작성된 회의록과 동물실험계획승인신청서·심의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동물실험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필요한 경우 그 외의 기록도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.

**제17조(조치요구)** 위원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운영세칙)**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당시 중전의 「동물실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」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## 서 약 서

소속 및 직위			
성 명		주민등록	-
한 자		번호	
주 요 경 력			
주 소	사무실		
	자 택		
연 락 처	전화번호(사)		이동전화
	E-mail		FAX

위 본인은 대전보건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직(   년   월  
일 부터   년   월 일까지)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업무를 엄정  
하고 성실하게 추진함은 물론, 본인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재직  
기간 및 이후에도 업무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등  
부당하게 활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  월   일

소속 :

성명 : (인)

대전보건대학총장 귀하



<b>4. 동물 실험형태 (해당사항 모두 V표)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재료채취,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과적 처치,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전·육종, <input type="checkbox"/> 방사선 조사, <input type="checkbox"/> 감염, <input type="checkbox"/> 발암, <input type="checkbox"/> 행동관찰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)			
<b>5. 특별한 주거(Housing) 및 사육조건 필요 유무 (예, Restraining Devices, Radioactive Materials / Other Biohazards, Infectious Disease)</b>			
<b>6. 저침습성 처치, 조직배양, 컴퓨터 모의시험 등에 의한 해당 동물실험 대체 가능성 여부</b>			
<b>7. 실험기간</b>			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~ 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			
해당 실험기간을 초과하여 실험이 진행될 가능성		<input type="checkbox"/> 있다	<input type="checkbox"/> 없다
<b>8. 사용 동물종 (해당사항에 Check) ※여러 종의 동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동물 종에 따라 별도 작성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Mouse <input type="checkbox"/> Rat <input type="checkbox"/> Guinea Pig <input type="checkbox"/> Rabbit <input type="checkbox"/> Hamster <input type="checkbox"/> Dog <input type="checkbox"/> Cat <input type="checkbox"/> Pig <input type="checkbox"/> Gerbil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 )			
<b>8.1. 세부내용</b>			
계통명		동물구입처(Maker)	
<b>품 질 구 분</b>			
<input type="checkbox"/> SPF (Specific Pathogen Free), <input type="checkbox"/> CL (Clean), <input type="checkbox"/> CV (Conventional), <input type="checkbox"/> Germ Free,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확인			
<b>동 물 규 격</b>			
체중: _____ g / kg	주령 _____ weeks	pregnant _____ days	마리수 ___♂, ___♀
<b>8.2. 해당 동물 종을 선택한 합리적 이유</b>			

**8.3 사용 동물수에 대한 합리적 근거사유(가능하면, 동물의 수를 산출한 통계학적 근거 제시)**

---

**9. 실험동물실 이외의 장소로 동물의 반출 혹은 외부 연구시설에서 동물을 반입할 경우, 그 필요 사유**

---

**10. 실험방법 (프로토콜) 개요**

※ 외과적 처치를 포함하지 않는 실험인 경우

  

※ 외과적 처치를 포함하는 실험인 경우, 수술방법

  

**수술 후 관리방법 (해당될 경우 해당 사항에 모두 V표)**  
 항생제 투여,  진통제 투여,  수액처치,  기타( )

※ 복수의 대규모 수술 실험(Multile Major Operative Procedures)을 시행하는 경우, 그 필요 사유  
 - 단, 원칙적으로 불허함

**11.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 (해당사항에 V표)**

Grade A; 생물개체를 사용하지 않는 실험, 원생동물, 무척추동물을 사용하는 실험

Grade B; 척추동물을 사용하지만 거의 고통을 주지 않는 실험

Grade C; 척추동물에게 약간의 스트레스 혹은 단기간의 작은 통증을 주는 실험

Grade D;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(진정제, 진통제, 마취제 등을 사용)

Grade E; 척추동물에게 회피 할 수 없는 스트레스 혹은 통증을 주는 실험(진정제, 진통제, 마취제 등을 사용하지 않음. 사용될 경우 실험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실험)

※ Grade E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, 연구목적상 분명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위원회 승인 후 수행

<b>12. 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 경감조치 관련</b>
<b>12.1. 진정제, 진통제, 마취제 등의 사용방법</b> (11 항목의 Grade D를 선택한 경우 기술함)
※ 마취제 (Anesthetics)와 근이완제 (Paralytic Agent)를 병용하는 경우, 병용사유
<b>12.2. Grade E를 선택한 분명한 연구 사유 기재</b> (11 항목의 Grade E를 선택한 경우 기술함)
<b>13. 동물에 극도의 통증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결과가 예상될 경우, 인도적인 실험종료 (Humane endpoints) 또는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</b>
<b>14. 안락사 및 사체처리방법</b> [마취제 사용(종류, 용량 등 기술), 경추 탈구 등 / 보관장소 및 사체처리 업체명 기술]
<b>15. 실험자를 위한 작업환경의 안전성 확보 여부</b>
<b>16. 해당실험이 불필요한 중복실험이 아님을 설명(가능하면, 대체방법 탐색 경위 등을 기술)</b>



[별지 제3호 서식]

##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

접 수 번 호		평 가 일 시	20 . . . .
(기 접 수 번 호)			
동물실험 과제명			
실 험 기 간	20 년 월 일 ~ 20 년 월 일		

### <심의 평가 기준>

1	동물실험계획 승인을 신청한 목적과 근거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	7	동물의 고통과 스트레스에 대한 평가의 적절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2	실험자의 교육이수 또는 훈련도·경험도의 적정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	8	Grade D 해당되는 경우, 진정·진통·마취제의 사용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 Grade E 해당되는 경우, 선택한 연구사유의 타당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
3	특별한 주거 및 사육조건의 필요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	9	인도적인 실험종료 또는 안락사를 취하기 위한 기준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4	해당 동물실험계획의 대체방안에 대한 설명 <input type="checkbox"/> 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미확인	10	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절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5	요구한 동물 종과 수의 타당성 (동물 수를 산출한 통계학적 근거의 제시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	11	실험담당자의 안전에 대한 대책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6	동물실험 방법(프로토콜)의 적정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※ 복수의 대규모 수술 실험 수행 시 필요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없음	12	불필요한 중복실험 가능성에 대한 설명 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적합

### <종합 심의평가 결과 및 의견>

결 과	의 견	
<input type="checkbox"/> 원안승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 후 승인 <input type="checkbox"/> 수정 후 재심 <input type="checkbox"/> 불 승인		
	평가위원	(인)

[별지 제5호 서식]

## 동물실험계획 승인서

### 1. 과제책임자

성 명	소속	직급	연락처	교육이수내용

### 2. 동물실험계획서

접 수 번 호	
동물실험 과제명	
실 험 기 간	
사용 동물 종 및 마리 수	
동물이 경험하는 통증 및 스트레스의 정도	

### 3. 승인 사항

심 의 일 자	
승 인 일 자	
승 인 번 호	



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서는 상기의 동물실험계획을 승인합니다.

20 . . .

대전보건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(인)

[별지 제7호 서식]

동물실험시설 실태조사표

조사일자:       년   월   일

조 사 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<실사 기준>

- 1. 시설기준 적합성; 온도, 습도, 환기횟수, 조도, 소음, 암모니아 가스 등
- 2. 사육용 기자재 적합성; Rack, cage, 물병, 자동급수 장치 등
- 3. 사육준비용 기자재 적합성; 싱크대, 멸균기, 청소용구 등
- 4. 깔짚, 사료, 물 등의 적합성 ; 보관상태, 해충유무, 유통기한 준수 등
- 5. 케이지 당 사육두수의 적합성
- 6. 위생상태 ; 동물실 내 위생상태, 케이지 상태 등

<시설별 조사내용>

[별지 제6호 서식]

##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

기 승인번호		실험기간	20 . . . . ~ 20 . . . .		
과제명 (한글/영문)					
실험목적					
승인실험기간	20 . . . . ~ 20 . . . .		총 ( 2, 3 )년 승인 중 ( 2, 3)년제		
동물실험계획	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없이 계속 <input type="checkbox"/> 변경후 계속 (필요시 변경승인신청서 함께 제출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(동물실험계획의 취소 등의 경우 그에 대한 설명)				
승인 받은 실험 계획	1년차	(해당 년차의 사용 실험동물 종류 및 마리수, 안락사 방법 기재)			
	2년차				
	3년차				
역할	소속	직급	성명	연락처	교육이수번호
과제책임자					
실험수행자					
실험변경사항	최초 승인받은 실험계획과 다른 변경사항 있을 경우 간략히 기재				

시설명(번호)	지적사항*

\* 지적사항이 많으면 별지 사용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대전보건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

위원장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서명)

[별지 제8호 서식]

## 동물실험 실태조사표

조사일자: 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조 사 자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인)

### <조사 기준>

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 준수 여부를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과제별로 조사한다.

1. 과제책임자, 동물실험담당자 ; 변경 여부
2. 실험형태 ; 재료채취, 외과적 처치, 유전·육종, 방사선 조사, 감염, 발암, 행동 관찰 등
3. 특별한 주거 및 사육조건 준수 여부
4. 실험기간 ; 승인 전 실험 착수, 기간 종료 후 실험 지속 등
5. 사용 동물 ; 동물 종, 계통, 구입처, 품질, 규격, 사용 수 등
6. 실험방법(프로토콜) 준수 여부
7. 진정·진통·마취제 ; 사용방법, 해당 약제 구입 및 사용 내역, 수행자 등
8. 인도적 종료시점 준수 여부

- 9. 안락사 및 사체처리 ; 방법, 해당 약제 구입 및 사용 내역, 수행자 등
- 10. 동물실험과 관련된 불만사항
- 11. 기타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서 내용의 준수 여부

<과제별 조사내용>

일련 번호	승인번호	과 제 명	과 제 책임자	지적사항 및 불만사항*

\* 내용이 많으면 별지 사용

20 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 
대전보건대학 동물실험윤리위원회  
위원장    \_\_\_\_\_ (서명)